

#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 제248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직임원	9인	2인
참석임원	9인	2인

1. 일시 : 2025년 12월 01일(월) 18:00-19:30 (회의 소집 통보일 : 2025년 11월 24일)

2. 장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301호)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 임원

- 이사(9) : 이계안, 김병환, 신권수, 김우영, 김영미, 이자희, 박승현, 이대화, 김지훈
- 감사(2) : 정재홍, 안상우(온라인)

#### ○ 불참 임원

- 이사(0) :
- 감사(0) :

#### ○ 배석 교직원

- 법인(4) : 사무국장 박재순, 실장 김정웅, 과장 임지훈, 담당 이현민
- 학교(0) :

### 4. 안건

제1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 승인 제청 심의

제2호. 기타 안건

- 1) 간서영 이사 결정
- 2)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 5. 개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이계안 이사장(이하 '이사장')의 사회와 사도신경 봉독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찬송가 393장을 다 같이 부르고, 김병환 이사가 대표 기도하다. 이어 다 같이 성경 말씀 시편 29편 3-11절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소리'의 말씀을 법인사무국 이현민 담당이 대표로 봉독한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이사장이 이사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이사회 개최 배경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개최 요건 등에 대해 법인사무국 김정웅 실장(이하 '실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대해 실장이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정관」 제30조(이사회 소집) 제2항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사회 회의 소집일시,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

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제248회 임시 이사회는 동조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SNS로 이사회 개최와 안건에 대해 설명 후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고, 금일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 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된다고 하자, 이사장이 말선 실장의 설명에 이어 당초 제정된 규정의 일부 조정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긴급히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부분에 대해 재차 양해를 구하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금일 이사회 현장에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이사회 개최 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되므로 제248회 이사회 개최를 선언한다.

이사장이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현 총장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 차기 총장 선임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관심이 큰 상황임을 밝히고, 이런 사유로 지난 제247회 이사회에서 마련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과 제공된 자료 19페이지에 「정관」 제44조에 대한 각 법률 전문가와 일부 구성 단체장의 의견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다.

## 6. 전차 회의록 보고

박재순 법인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2025.11.18.(화)에 개최된 제247회 이사회 회의록과 주요 심의 사항 '제1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제정 승인 제청', '제2호. 제9대 평택대학교 총장 선출 문명 지침(매뉴얼) 승인 제청'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보고하고, 각 의결 사항과 '제3호. 기타 안건'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이사장이 참여한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의견 유무를 물어 이견 없으므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박승현 이사의 제청으로 제247회 이사회 회의록 채택을 만장일치 가결하다.

## 7. 법인 및 위원회 현황 보고

사무국장이 법인 및 위원회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총장선임제도위원회의 위원으로 김우영 이사와 김지훈 이사가 추가되었음을 보고하다.

## 8. 심의 사항

### [의안] 제1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 제청

이사장이 회무 처리 순서와 관련하여 '제1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 제청', '제2호. 기타 안건' 그 외 '보고 사항'이 있다고 설명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연계성이 있는 보고 사항 제1호와 의안 제1호를 먼저 다루고 제2호 기타 안건과 보고 사항 제2호, 제3호를 다루도록 하자고 의견을 개진하고, 참석한 전체 이사의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이사장이

sp	11	11	11	12
----	----	----	----	----

12	11	11	11
----	----	----	----

100  
규

100  
규

안건 '제1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실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실장이 안건 제1호와 관련,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상정된 규정 개정 사유와 함께 전자 회의에서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시행 검토 과정에서 회자 되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추가 검토하니,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 규정 제2조(총장후보자의 자격과 능력) 제4항 개정, 동조 제5항과 제2조의2(총장 선출 관련 절차에서의 제척), 제2조의3(형평성 및 공정성 확보)을 신설하고 전체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의 해석 및 미비사항의 처리'를 포함한 부칙을 반영하였다고 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제2조(총장후보자의 자격과 능력) 제4항의 종전 규정은 "원칙 대학의

교무위원 및 단과대학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원할 경우, 후보 신청 전에 교내 보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규정 적용 시 총장 보직의 공석 발생 우려가 상존할 뿐 아니라, 현 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일부 어전이라고는 하나 '총장 연임 배제' 문제와 결부될 경우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안된 개정안에서는 현직 총장뿐 아니라 교무위원·단과대학장·대학평의원의 위원이 총장 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직무 정지'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다. 둘째, 등 규정 제2조(총장후보자의 자격과 능력) 제5항은 신설 조항으로 "법인의 이사, 감사는 재임 중 총장후보자로 지원할 수 없다. 총장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서 제출 이전에 해당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서 빠져 있던 법인 이사와 감사가 총장 후보자로 지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다. 앞선 제4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직무 정지'가 아닌 '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부연하다. 셋째, 등 규정 제2조의2(총장 선출 관련 절차에서의 제척) 신설로, 이는 '직무 정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등 교내 보직자가 현직에서 완전히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 후보자로 지원하는 경우, 총장 선출 관련 절차에서 업무 면관성으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장 후보 등록 시 총장 선출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당연 제척되며, 그 범위는 총장추천평가위원회의 활동 및 의결, 이사회의 총장 후보 심사·면접·선임 의결, 대학평의원의 의견 수렴 또는 관련 심의, 내부자료·정보 접근, 총장 선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업무 등으로 규정하였고, 제2항을 통해 "제척된 자는 총장 선출과 연계된 업무에 참여하거나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하다. 넷째, 제2조의3(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신설로, 총장 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후보 등록 이후 총장추천평가위원회, 이사회, 대학평의위원회와 관련된 내부자료·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대학 구성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간접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사·감사·총장추천평가위원·평의위원회 위원에게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장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강력히 규정하였고,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위의 자료만 참고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다. 이어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은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총장추천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추천평가위원회는 위반 사실 여부 검토 후 자격상실 여부를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부연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고 하여 '규정의 해석 및 미비사항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다.

#### (정재용 감사 배석)

제2조(총장후보자의 자격과 능력) 제5항 신설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의하자, 신규 내용으로 "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재임 중 총장 후보로 지원할 수 없으며, 총장 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서 제출 이전에 해당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종전 규정에서 교내 재임중인 총장, 교무위원 등 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른 대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학평의원의 위원뿐 아니라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게 되었다고 하다.

제2조(총장후보자의 자격과 능력) 제4항에서 종전 보직을 사임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직무 정지'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나, 보직을 맡고 있는 교무위원의 총

장 후보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 선출 과정 종료 시점까지 직무가 정지되므로, 탈락 이후 기간에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필요하게 직무 정지가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자. 이에 동의 의사를 표하고, 총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되, 후보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면 즉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대학교의 총장 선출 사례를 들어, 단계별 전함을 이행하되 탈락하는 경우, 당초 보직으로 복귀하는 절차가 명시되었다고 부연하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사장이 총장 후보 선별 과정에서 총장추천평가위원회의 3배수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는 즉시 복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자고 의견을 개진하다.

제2조 관련 문구에 대해 현행 개정안에서 "종료 시까지 직무를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실제로는 직무 정지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행위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종료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표현할 것을 제안하고, 개정안에서 신설 제안된 '제2조2', '제2조3'을 법령 지칭에 맞도록 '제2조의2', '제2조의3'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하다. 또한 제2조의3의 경우, 결격 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처벌 규정이 혼재하여 이를 법문 체계에 맞도록 분리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이에 대해 이사장이 참석한 전체 이사에게 추가 의견 개진을 요청하자. 사안의 성격상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2조의3의 제4항과 제5항이 논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순서를 바꾸고, 총장추천평가위원회가 위반 사실 여부 검토 후 자격 상실 여부를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하여 절차상 총장추천평가위원회 결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이사장이 참석한 전체 이사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각 이사에 의해 제기된 의견에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조문 구성과 관련된 사항만 정리해 반영하고, 원안 중 수정된 내용을 포함 하되, 전체 규정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워딩 정비를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참석한 전체 이사의 동의·재청으로 가결하다.

<p>○ 의견 사항</p> <p>• [안건] 제1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총장 선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 재청</p> <p>1) 규정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b>개정안</b></p> <p><b>제2조(총장후보자의 자격과 능력) ①-③ &lt;생략&gt;</b></p> <p>④ 현직 대학의 총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단과대학장 또는 대학평의원의 위원이 총장 후보자로 지원한 경우에는 총장 선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총장 선출 검증 또는 평가를 통하여 총장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직무 중지를 해제한다. &lt;개정 2025.12.01.&gt;</p> <p>⑤ 법인의 이사, 감사는 재임 중 총장후보자로 지원할 수 없다. 총장후보자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서 제출 이전에 해당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lt;신설 2025.12.01.&gt;</p> <p><b>제2조의2(총장 선출 관련 절차에서의 제척) ①</b> 총장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총장 선출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당연히 제척되며, 제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총장추천평가위원회 활동 및 의결</p> <p>2. 이사회의 총장 후보 심사·면접·선임 의결</p>
---	--

3.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견 수렴 또는 관련 심의

4. 내부자료·정보의 접근

5. 총장 선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업무

② 제척된 자는 총장 선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업무에 참여하거나, 그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5.12.01.]

**제2조의3(합평성 및 공정성 확보)** ① 총장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후보 등록 이후 총장 추천평가위원회, 이사회, 대학평의위원회와 관련된 내부자료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② 총장후보자는 대학 구성원 및 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간접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총장후보자는 이사·감사·총장추천평가위원·평의위원 위원에게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장선출행정지원단은 위반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총장추천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평가추천위원회는 위반 사실 여부 검토 후 자격사실 여부를 즉시 결정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장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5.12.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해석 및 미비사항의 처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2) 전체 규정을 재정검하여 필요시 적정하게 워딩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  
- 본 권한 위임에 따라 '직무 정지'를 '직무 중지'로 변경

**[의안] 제2호. 기타 안건**

이사장이 '제2호. 기타 안건'을 상징하며 1) 간서명 이사로 이사장, 이대학 이사, 김지훈 이사를 2) 회의록 비공개 범위는 관련 법령과 본 법인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는 의견을 개진하자. 천권수 이사의 동의와 김영미 이사의 재형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2호. 기타 안건

1) 간서명 이사 결정

- 이사장, 이대학 이사, 김지훈 이사

2)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 회의록 비공개 범위 :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① 의안 제1호 발언자 익명처리

김
이
...
...
...

김
이
...
...
...

**10. 폐회**

이사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이사회 이사의 동의와 김지훈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안장일처 가결하고 19시 30분에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5. 12. 01.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계안 이계안

이 사 김병환 김병환

이 사 김영대 김영대

이 사 김우영 김우영

이 사 김지훈 김지훈

이 사 박승현 박승현

이 사 천권수 천권수

이 사 이대화 이대화

이 사 이자희 이자희

감 사 정재훈 정재훈

감 사 안삼우 안삼우

2025. 12. 01.